

제414회 임시회

'24. 1. 24.(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4년 1월 15일
- 회부일자 : 2024년 1월 16일

3. 제안사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3. 7. 24.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지방세기본법」 개정(2024. 1. 1. 시행)으로 납부지연가산세와 가산금이 가산세로 통합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개선함(안 제6조)
- 납부지연가산세와 가산금이 가산세로 통합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서식)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용어,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5. 검토의견

가. 제출배경

-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권고(2023.7.25.)’에 따라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되지 않고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개선하고, 「지방세 기본법」 개정(2024.1.1.)사항을 반영해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6조는 포상금 지급심의에 관한 것으로,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 예산담당	제6조(지급심의) 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장·군수가 해당 시·군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시·군에서 세입징수 포

<p><u>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회계감사 팀장으로 한다.</u></p> <p><u>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u></p> <p><u>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포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u> <u>2. 포상금 지급기준</u> <u>3. 도세 등의 증대에 이바지한 공적</u> <u>4.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u> <p><u>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상금 지급에 관하여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시·군위원회”라 한다)의 자체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u></p> <p><u>2.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포상계획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u></p>
--	--

○ 본 개정안은 현행 충청북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위촉위원 없이 내부 위원만으로 구성하여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위원회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임.

○ 현행 위원회와 달리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에 따라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에

1)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등”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10명의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다.
2. 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6명의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 전체 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시·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 또는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이 담보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됨.

- 안 별지 제1호서식은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종 전	개 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2. (생략)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4.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	제2조(정의) ① ----- -----. 1. ~ 22. (현행과 같음)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서 삭제> <삭제>

본부장이 된다.

- 2. 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 또는 국장(실장 및 국장이 없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이 된다.
-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
 - 가. 시·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 나. 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세무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u>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u></p> <p>25. ~ 36. (생략)</p> <p>② (생략)</p>	<p>25. ~ 3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

- 이에 따라, 현행 별지 제1호서식에서 사용해온 ‘가산금’ 용어를 ‘가산세’로 개정하려는 것임.
-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권고한 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개선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됨.
-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신속하게 반영하여 법적 안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함.